

# 농 촌 협 약 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양군(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 농촌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류·협력하는 등 농촌협약 이행에 적극 노력한다.

제2조(협력사항 등)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함양군이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협약 대상사업(이하 “협약 대상사업” 이라 한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2. 함양군은 협약 대상사업, 연계사업 등에 필요한 지방비를 편성하고 지원되는 국비와 함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계획했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함양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양 기관은 농촌협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약사업 등) 협약 대상사업, 연계사업 등의 내용과 범위는 부속서에 따른다.

제4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5년(2024~2028년)으로 한다. 다만, 예산 미편성, 사업 종료 등의 중대한 사유 발생 등으로 협약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양 기관이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한 사항과 공유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 기관의 동의에 의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협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에 협약서(세부규정 부속서 포함)를 작성·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4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송미령



함양군

군수 진병영

진병영

## 농림축산식품부-함양군 농촌협약 부속서

제1조(목적) 이 부속서는 양 기관이 농촌협약서와 함양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대상 생활권) 양 기관은 함양군 단일생활권(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을 지원한다.

제3조(협약 대상사업) ① 양 기관의 협약 대상사업은 별표1과 같다.

② 협약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협약 대상사업은 협약 체결 이후 추가할 수 없으며, 사정상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포기할 수 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법령과 사업시행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한다.
3.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계획서 수립 등의 단계에서 개별사업 시행지침,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조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국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4. 협약기간 동안에 협약 대상사업이 부득이하게 폐지 또는 종료, 예산 미편성, 예산 감액 편성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4조(협약 연계사업) ① 협약 대상사업 이외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타 부처사업, 함양군 자체사업이 농촌협약 연계사업에 해당하며 별표2와 같다.

② 협약 연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함양군은 연계사업 예산 확보, 공모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사업 종료, 지방이양, 사업물량 감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연계사업 목록과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 합의로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다만, 단순 이월·재이월은 제외한다)
2. 총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협약 대상사업과 연계사업을 포함한다)
3. 기타 양 기관이 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 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 대상사업 중 착수연도 기준 2년 이상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은 경우
2. 국가적·지역적 전염병, 천재지변 등에 따라 협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제7조(이행관리) ① 양 기관은 농촌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제6장에서 제시한 집행 및 관리계획 이행
2. 함양군이 마련한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 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유지·발전
3. 함양군이 제기하는 농촌협약 이행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
4.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 활용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함양군에 추진상황, 이행실적, 우수사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성과관리) ① 양 기관은 농촌협약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활성화계획 제7장에서 제시한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협약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기간 내와 협약 종료 후에 성과목표와 관리계획 등을 점검 또는 평가할 수 있으며, 함양군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협약서 및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의미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1]

□ 협약 대상사업 목록(협약 부속서 제3조 관련)

사업명	읍면명 (지구)	사업기간(년)		사업비(백만원)			
		시작-종료	소요연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대상사업 합계				38,130	25,539	11,732	859
◇ 일반농산어촌개발							
- 중심지활성화(일반형)	함양읍	'24~'28	5년	19,000	13,300	5,700	-
- 기초생활거점조성(통합)	마천면	'24~'28	5년	6,000	4,200	1,800	-
- 기초생활거점조성(통합)	유림면	'24~'28	5년	6,000	4,200	1,800	-
- 기초생활거점조성(2단계)	백전면	'24~'28	5년	1,000	700	300	-
◇ 농촌형교통모델							
- 농촌형교통모델	함양군 전체	'24~'28	5년	2,600	1,300	1,300	-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안익면 하원리	'25~'28	4년	2,130	1,499	492	139
◇ 가족분노처리지원							
- 축산악취개선	함양군 전체	'24	1년	1,200	240	240	720
◇ 농촌유희시설활용 지역활성화							
- 농촌유희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안익면	'26~'27	2년	200	100	100	-